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1976.09.09	제정	1977.03.01	일부개정
1981.04.01	일부개정	1988.03.01	일부개정
1990.09.01	일부개정	1991.03.01	일부개정
1995.03.01	일부개정	1996.09.01	일부개정
1997.03.01	일부개정	1999.09.01	일부개정
2001.03.01	일부개정	2004.03.01	전면개정
2005.09.01	일부개정	2006.03.01	일부개정
2006.09.01	일부개정	2008.03.01	일부개정
2009.09.01	일부개정	2010.09.01	일부개정
2011.03.01	일부개정	2011.09.01	일부개정
2012.03.01	일부개정	2013.03.01	일부개정
2014.03.01	일부개정	2015.03.01	전면개정
2016.09.01	일부개정	2017.03.01	일부개정
2018.03.01	일부개정	2019.03.01	일부개정
2019.10.01.	일부개정	2020.03.01.	일부개정
2020.10.01.	일부개정	2020.12.01.	일부개정
2021.01.01.	일부개정	2021.03.01.	일부개정
2021.06.01.	일부개정	2021.09.01.	일부개정
2021.09.01.	일부개정	2021.12.01.	일부개정
2022.04.01.	일부개정	2022.04.15.	일부개정
2022.09.01.	일부개정	2022.11.01.	일부개정
		2023.03.01.	일부개정

<대학원행정팀>

제 4 장 학위논문

제 2절 학위청구논문 심사

제40조(지도위원회 구성) ① 소속대학장은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학과별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학생 개인별 지도위원회를 구성하게 한다.

② 입학 후 9학점 이상의 교과목 이수가 끝나면 학생과 지도교수의 의사를 참작하여 소속 대학장은 해당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의 전공분야 교수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외부의 교수 또는 전문가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도위원회 구성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학과별로 시행할 수 있다.

제41조(연구계획서) ① 연구계획서는 과정 이수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서로 작성하여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회를 거쳐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도 수정원서를 제출하고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회를 거쳐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학위 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 청구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4년, 박사과정은 8년, 석·박사통합과정은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② 군복무(의무복무)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 및 연수,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간 등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재입학자의 학위 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3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32조에서 정한 석사과정 기준을 충족 또는 충족예정인 자. <개정 2021.9.1.>
2. 삭제 <2021.9.1.>
3. 지도교수 지정과목 이수자일 경우 24학점 외에 해당과목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4.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입학년도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박사학위 포기자의 경우에는 입학년도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6.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한 자
7. 연구윤리 교육을 수강한 자

② 제65조제2항에 의거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경우, 연구지도 학점을 별도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9.1., 2021.12.1.>

③ 학사관리주관대학이 세종캠퍼스 소속인 학과 및 전공의 경우, 일반공통 필수교과목 중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32조에서 정한 박사과정 기준을 충족 또는 충족예정인 자. <개정 2021.9.1.>
2. 삭제 <2021.9.1.>
3. 지도교수 지정과목 이수자일 경우 30학점 외에 해당과목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4.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입학년도로부터 8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SCIE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의 경우 등재후보지도 가능)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단독 또는 공동연구의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로 게재(acceptance letter 포함)한 자.(다만,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소속대학장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내규로 정한 논문게재와 동등 업적으로 자격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
7.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한 자
8. 연구윤리 교육을 수강한 자

② 학사관리주관대학이 세종캠퍼스 소속인 학과 및 전공의 경우, 일반공통 필수교과목 중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자의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의2 (재학연한 초과자의 학위 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① 수료 후 논문제출연한(재학연한)이 경과하여 영구수료 처리 또는 처리 예정인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② 연장이 허가된 자는 이미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생의 제2외국어 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연장이 허가된 자는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 청구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진입한 첫 학기는 재입학금이 부과된다.

④ 학위 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및 허가는 1회에 한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한 2학기 이내에 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제45조(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 요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은 각 학과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대학원학사위원회 또는 학과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제46조(의학과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 의학과는 논문제출 예정 학기보다 적어도 1학기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논문 예비발표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삭제 2022. 11. 1.>

제48조(학위 청구논문 심사 제출서류) ① 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청구 학위별 제출서류를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용 논문 3부 (학·연·산협동과정 4부)
2. 학위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3. 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4. 학위 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명단
5. 학위 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6.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

③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용 논문 5부 (학·연·산협동과정 6부)
2. 학위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3. 학위 청구논문 제출승인서
4. 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5. 학위 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명단
6. 학위 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7.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

제49조(심사용 논문의 분량) 논문의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

제50조 <삭제 2022. 11. 1.>

제51조(심사용 논문의 개요 및 번역본 제출) ① 논문개요는 2000자 내·외로 하여 논문 목차 앞에 오게 한다.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국문으로 된 경우에는 논문개요를 외국어로 작성하고,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국문개요와 국문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문학계와 학문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52조(논문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9.1.>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에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1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최소 1명 이상, 최대 3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단, 교내 타학과 교원을 외부교수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

- ④ 학·연·산협동과정의 논문심사위원회에는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심사위원 외에도 학위청구논문의 공동지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9.1.>
- ⑤ 학과나 전공의 사정 혹은 논문의 성격상 교내·외 심사위원 구성을 위 2항, 3항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전에 학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1.>
- ⑦ 각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53조(논문심사 판정) ①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② 논문심사위원회의 합격판정은 석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2 이상, 박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54조(보완 논문심사)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필요에 따라 심사를 중지하고 논문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후 1회 에 한하여 보완 논문심사를 할 수 있다.

제55조(박사학위 논문심사 횟수) 박사과정 논문심사는 최소한 2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9.1.>

제56조(재심사) 논문심사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논문심사 결과보고) ① 심사위원회는 소정기일 내에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완료하고, 합격과 불합격으로 최종 판정한다.

-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소속대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학위논문의 작성) ① 논문심사에서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심사에서 수정·보완 요청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학위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

- ② 각 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9.1., 제1항에서 이동 2022. 11. 1.>
- ③ 각 학위청구논문을 기타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외국어문학과와 학문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1., 제2항에서 이동 2022. 11. 1.>
- ④ 학위논문의 크기는 4·6배판(가로 188mm, 세로 257mm)을 원칙으로 한다. <제61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11. 1.>
- ⑤ 학위논문의 차례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제64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11. 1.>

1. 논문 표지
2. 속표지
3. 심사완료 검인서
4. 초록
5. 감사의 글 (선택사항)
6. 서문 (선택사항)
7. 사사 (선택사항)
8. 목차
9. 표 목차 (선택사항)

10. 그림 목차 (선택사항)
11. 기호 설명 (선택사항)
12. 본문
13. 참고문헌
14. 부록 (선택사항)
15. 색인 (선택사항)

⑥ 학위논문의 초록 순서는 학위논문 작성 언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11. 1.>

1. 국문 학위논문: 국문, 영문
2. 영문 학위논문: 영문, 국문
3. 기타 외국어 작성 학위논문: 기타 외국어, 영문, 국문

⑦ 기타 학위논문의 작성방법, 규격 및 형식은 따로 정한다. <제6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11. 1.>

제59조(학위논문의 제출) 논문심사에서 합격한 자는 당해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원문, 심사완료 검인서 및 논문초록을 등록하고, 저작권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

제60조 <삭제 2022. 11. 1.>

제61조 <삭제 2022. 11. 1.>

제62조 <삭제 2022. 11. 1.>

제63조 <삭제 2022. 11. 1.>

제64조 <삭제 2022. 11. 1.>